

# 재난적 해양오염사고로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재산처분권 신설방안

김형만 · 이승환 · 김한규 · 장명길 · 한미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핵심용어 : 해양오염, 재산처분, 해양환경관리법

## 1. 연구배경

긴급 재산처분 조치란 기름 또는 유해물질로 인해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심각한 오염 피해가 예상될 경우 국민안전처 장관이 이를 방지·경감 또는 제거를 위해 오염물질이 적재되어 있는 선박·해양시설 등을 파괴하거나 소각처리 등의 일련의 조치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해양국들은 연안해역에서 기름·유해물질등 사고로 인해 자국연안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박 파괴·소각처리 등의 강력한 ‘재산처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제협약에 가입은 물론 자국 법령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해역은 동북아시아 해상물류의 중심지이며 세계 3위 수준의 원유를 해상을 통해 수입하고 있고 유해화학물질의 운송량도 증가추세에 있어 이러한 재앙적 사고 발생의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제도의 필요성

1967년 3월 ‘Torrey Canyon호(60,000GT, 원유선)’의 좌초 사고로 해상에 대형 기름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손상에 관심이 제고되었고, 영국정부에 의한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었으며 결국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중폭격으로 선박파괴와 원유소각을 시도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해상에서 자국연안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해상개입협약’을 채택하였다. 일본의 경우 1974년 11월 제10왕양호(43,723GT, 가스·유해물질운반선) 충돌사고 이후 공해개입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법과 유사한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방지법’에 선박 등의 재산처분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해상교통량 및 위험선박의 운항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 기름·유해물질 등으로 재앙적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관련법에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 3. 입법방향

우리나라의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Torrey Canyon호, Amoco Cadiz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확산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긴급조치로 폭격·파괴 등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재산처분에 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69/73공해개입협약’ 가입을 통하여 국내법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지만 협약에서 말하는 ‘공해(high seas)’ 개념의 모호성과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문제 등을 감안할 때 가입실익을 판단하기 어렵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선박보험약관에 ‘오염위험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UN해양법 등 관련협약의 연안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조치 근거규정을 참고 할 때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재산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재앙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경감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에 명시적으로 긴급재산처분에 대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 4. 예상되는 문제점

선박의 파괴·소각 등의 조치가 부득이한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연안해역에 막대한 오염피해 또는 국민의 건강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처분해야 한다.

재산권 처분에 관한 선주와의 배상 등 민사적 문제는 선박보험약관에서 오염위험이나 위협을 방지·완화시키기 위해 정부당국의 조치로 인한 선박의 멸실, 손상 등은 담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5. 기대효과

재앙적사고 우려가 있는 해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개입조치 및 재산처분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관할 배타적 경제수역의 환경보전 체제 구축할 수 있어 인접국간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다.